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합 동 군 사 대 학 교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경두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합동군사대학교가 합동성 교육 강화에 전념하고 각 군 대학은 군 별 전문화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사대학 예하의 육·해·공군대학을 각 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육·해·공군대학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 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및 합동군사대학교와 합의 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

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합동교리 및 각 군 교리의 연구”를 “합동교리의 연구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”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총장, 합동참모대학의 장 및 교수부의 장은 육군·해군·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하며, 각각 다른 군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”를 “총장은 육군·해군·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.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각 군 대학을 제외한”을 “합동군사대학교의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합동교리 및 각 군 교리의 연구”를 “합동교리 연구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과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재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의 시행 당시 합동군사대학교 소속 육군대학, 해군대학, 공군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이 영에 따른 각 군 소속의 육군대학, 해군대학, 공군대학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.

② 이 영의 시행당시 종전의 합동군사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이 영에 따른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각 군 소속 육군대학, 해군대학, 공군대학의 교직원으로 본다.

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
제9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 중 “합동참모대학”을 “합동군사대학교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임무)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	제2조(임무)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1. 국방정책, 군사전략, 국방기획 및 합동 · 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	1. 국방정책, 군사전략, 국방기획 및 합동 · 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
2. 육군 · 해군 · 공군의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, 전술제대(戰術梯隊)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업무	2. 삭제
2의2. 삭제 <2015.12.30>	2의2. 삭제 <2015.12.30>
2의3. 합동 · 연합작전 및 국제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	2의3. 합동 · 연합작전 및 국제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
3. 합동교리 및 각 군 교리의 연구 · 발전에 관한 업무	3. 합동교리의 연구 · 발전에 관한 업무
4.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	4.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
제4조(조직)	제4조(조직)
① 합동군사대학교에 합동참모대학, 육군대학 · 해군대학 · 공	① 삭제
	② 삭제

군대학(이하 "각 군 대학"이라 한다) 및 국방어학원을 둔다.	③ 삭제
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와 그 밖에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.	④ 삭제
③ 합동참모대학 및 각 군 대학의 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며,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7.12.19>	⑤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,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④ 교수부의 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	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,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	
제5조(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)	제5조(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)

① 총장, 합동참모대학의 장 및 교수부의 장은 육군 · 해군 · 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하며, 각각 다른 군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9>

② 각 군 대학을 제외한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 · 해군 · 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하여야 한다

제6조(업무 분장)

- ① 합동참모대학의 장은 군사전략, 군사기획 및 합동 · 연합작전에 관한 교육 및 합동교리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육군대학의 장은 육군의 기본교리, 작전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에 관한 교육 및 합동교리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해군대학의 장은 해군의 기

- ① 총장은 육군 · 해군 · 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. <개정 2014.12.9>
-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 · 해군 · 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하여야 한다

제6조(업무 분장) 삭제

- 본교리,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, 해양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 및 합동교리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공군대학의 장은 공군의 기본교리,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, 항공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 및 합동교리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한다.
- ⑤ 국방어학원의 장은 합동 · 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교육 등의 지도·감독)

-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및 각 군 교리의 연구 · 발전업무 및 육군 · 해군 · 공군 합동교육을 지도 · 감독한다.
- ② 육군참모총장,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

제7조(교육 등의 지도·감독)

-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 · 발전업무 및 육군 · 해군 · 공군 합동교육을 지도 · 감독한다.
- ② 삭제
- ③ 제1항에 따른 지도 · 감독의

의 명을 받아 각 군 대학의 소속 군 교육을 지도 · 감독한다.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 · 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	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부칙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재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의 시행 당시 합동군사대학교 소속 육군대학, 해군대학, 공군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이 영에 따른 각 군 소속의 육군대학, 해군대학, 공군대학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. ② 이 영의 시행당시 종전의 합동군사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이 영에 따른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각 군 소속 육군대학, 해군대학, 공군대학의 교직원으로 본다.
--	---

제9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제2호 중 “합동참모대학”을 “합동군사대학교”로 한다.
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조직관리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-6579